

부동산관리명령신청

신청인(매수인)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(채무자)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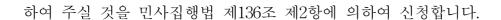
신 청 취 지

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경○○○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 소속 집행관 그 밖의 적당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,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- 1. 신청인(매수인)은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경○○○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입니다.
- 2. 신청인은 20 ○ ○ · 매각기일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인이 되었고, 20 ○ ○ ·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.
- 3. 그런데 대금지급기한은 20〇〇. 〇〇. 〇〇.이고, 신청인은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,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 그 밖의 적당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,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관리하도록





첨 부 서 류

- 1. 비용예납서(관리인보수 기타 관리비용) 1통
- 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신청인(매수인)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부동산의 표시

- 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ㅇㅇㅇㅇm²
- 2.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
 - 1층 299.66 m²
 - 2층 299.66 m²
 - 3층 299.66 m²
 - 4층 299.66 m²
 - 지하층 299.66㎡. 끝.

제출법원	집 행 법 원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
비 용	인지액 : 1,000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
기 타	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·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있다.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.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⑥채무자·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136조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